

『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 회계관직을 일치시켜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조문 개정
(안 제1조, 제4조제1항제5호, 제14조제2항)
-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
(안 제12조제1호)
 - (현행)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국장
 - (변경)기금운용관 : 생활안정과장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된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<구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> 및 <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>의 변경사항을 현 조례에 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